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12
----------	--------

발의년월일 : 2012. 11. 29.

발의자 :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의원(7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종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을 5일 연장하여 연간 제1차·제2차 정례회 회기일수를 45일에서 50일 이내로 하고 또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도 매년 6월 20일에서 10일 앞당겨 6월 10일에 집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간 회의총일수 중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에서 50일 이내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나. 정례회의 집회일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안 제4조제1호).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추가되는 예산 없음

6. 기타사항 :

- 가. 입법예고 : 필요
- 나.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다. 관계법령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201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45일”을 “50일”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기) ①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u>45일</u> 이내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u>20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p> <p>2. (생 략)</p>	<p>제3조(회기) ①----- ----- ----- ----- <u>50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 ----- ----- ----- -----</p> <p>1. ----- <u>10일</u> -----, ----- ----- ----- -----.</p> <p>2. (현행과 같음)</p>

[관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1. 7.14 법률 제10827호)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0.14 대통령령 제23222호)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